

경영(수시) 공시
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래 ▶

1. 공시사유 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 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
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5호)

2. 공시대상

○고객명 : 김○○

○금액 : 8,572천원

○사유 : 신용대출 부실로 인한 2018년도 중앙회
정기감시 시 문책(변상포함) 사항

○수지예상되는영향 : 총 대출금중 관련 직원 현○○ 변상금액
4,286천원을 제외한 4,286천원에 대한
손실예상

○향후 대책 : 손실예상액(잔존채권) 대손상각 처리 후
사후관리도록 함.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



경영(수시) 공시
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 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5호)

2. 공시대상

- 고객명 : 현○○, 강○○, 오○○, 김○○
- 금액 : 5,664천원
- 사유 : 퇴직직원 변상금 회수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2018년도 중앙회 정기감사 시 문책(변상포함)
사항
- 주요내용 : 관련 직원 정○○ 490천원, 강○○ 529천원
강○○ 680천원 변상 처분함
- 수지에 미는 영향 : 총 금액 중 관련자 변상금액 1,699천원을
제외한 3,965천원에 대한 손실예상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

